

2013. 2. 4. 의결, 2013. 7. 1. 시행

조세범죄 양형기준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은 조세포탈 등(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상습조세포탈 등(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5항), 특가법상 조세포탈(특가법 제8조 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항), 특가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어표 ◆

□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 조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억 원 미만	-8월	6월-10월	8월-1년2월
2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3	5억 원 이상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 또는 결정·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3유형에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특가법상 조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2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2년6월-5년	4년-6년	5년-8년
3	200억 원 이상	4년-7년	5년-9년	8년-1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 형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 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 신고·기한 후 신고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 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 반 양 형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미만	-10월	6월-1년	10월-1년2월
2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3	50억 원 이상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3	300억 원 이상	2년-4년	3년-6년	5년-7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일반 조세포탈

가. 제1유형 :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3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 또는 결정·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 정 형
일반 조세포탈로서 포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본문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일반 조세포탈로서 ①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인 경우이고, 포탈세액 등이 신고세액 등의 30/100 이상인 경우, ②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단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상습조세포탈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5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형의 1/2 가중

2. 특가법상 조세포탈

- 가. 제1유형 :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연간 2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 정 형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가. 제1유형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제2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 정 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제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등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위 행위의 알선·중개행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등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4.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가. 제1유형 :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
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
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
액'이라 한다)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
다(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구 성 요 건	적 용 범 조	법 정 형
<p>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p>	<p>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p>	<p>1년 이상의 징역,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p>
<p>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p>	<p>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p>	<p>3년 이상의 징역,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p>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 조세포탈 / 특가법상 조세포탈

가.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포탈세액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조세포탈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기간과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산입될 익금이나 손금의 확정시기의 조작 등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다.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탈세행위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 또는 세무조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포탈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또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또는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바.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
 - 피고인이 담보의 제공이나 분할납부의 약속 등으로 장래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피고인의 재산에 체납처분이 집행되어 포탈세액 중 약 1/3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를 의미한다.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포탈세액의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단순한 외형 부풀리기 등을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탈세행위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 또는 세무조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일반 조세포탈 범죄, 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1. 조세포탈 유형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일반 조세포탈 유형)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경우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또는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1유형)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